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40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73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8
다. 관계기관 의견	15

I. 제안경위

1. 전진숙의원안

가.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2. 김용만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30.

다.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전진숙의원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2. 김용만의원안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두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임.

먼저, 전진숙의원안은 (1)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함)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2) 사례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3)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또한, (4)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등에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5)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6)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및 제4조의10 신설, 제20조제2항제1호).

김용만의원안은 (1)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가정폭력사망 사건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등에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4)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함)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음.

다만, 전진숙의원안은 김용만의원안과 달리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의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사 요청권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전진숙의원안	김용만의원안
<u>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u> <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1. 가정폭력사망사건등 통계에 관한 사항</u> <u>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u> <u>3.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항</u> <u>4.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u>	<u>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u>

전진숙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에 관한 사항 <u>제4조의9(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사망

전진숙의원안	김용만의원안
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3.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 5. 의료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전진숙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6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1. 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에----- -----	제20조(벌칙)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¹⁾를 말함. 최근 4년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되는 건수는 매년 44,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구속되는 인원은 2020년 330명에서 2023년 57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

(단위: 건, 명)

연도	검거건수	검거총인원	구속인원	가정보호사건 송치
2020년	44,459	52,431	330	19,379
2021년	46,041	53,985	410	24,867
2022년	44,816	52,146	496	25,319
2023년	44,524	55,176	578	21,146

자료: 경찰청,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https://www.data.go.kr/data/15037060/fileData.do?recommendDataYn=Y>)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애인 관계인 경우의 비율이 2021년 39.5%(친족 30.2%, 애인 9.3%)에서 2023년 45.4%(친족 34.4%, 애인 11.0%)로 높아짐.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함²⁾.

<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율 >

(단위: %)

구분	계	친족	애인	타인	이웃/지인	친구/직장동료	기타	고용/거래
2021년	692건 (100.0)	30.2	9.3	22.8	17.1	9.8	9.6	1.3
2022년	738건 (100.0)	32.0	12.1	19.0	24.1	6.7	4.6	1.5
2023년	801건 (100.0)	34.4	11.0	22.1	18.0	9.2	3.1	2.2

주: 살인범죄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범죄가 모두 포함됨

자료: 대검찰청

2) 한국여성의전화, “2024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참조(<https://hotline.or.kr/archive/?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Jt9&bmode=view&idx=156503746&t=board>)

이처럼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가정폭력 사망검토제가 도입되면 국가의 책임하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가정폭력 대응체계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망사건의 예측가능한 패턴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현 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법률에 ‘가정폭력 사망검토팀’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하고 있음³⁾.

- 미국 뉴욕주는 「뉴욕주 행정법(NYS Executive Law)」 575조 10항⁴⁾에 따라

3)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에 대한 내용은 허민숙,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64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5. 3. 25. 11~26쪽을 참조하여 각 국가의 규정,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고 작성함.

4) NYS Executive Law 575(10) 10. Fatality review team.

(a) Ther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a fatality review team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 conjunction with local representation, the domestic violence-related death or near death of individuals, with the goal of:

(i) examining the trends and patterns of domestic violence-related fatalities in New York state;

2012년부터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에 경찰, 지역검사실, 보건부,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등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사망검토팀(NYS Domestic Violence Fatality Review Team)을 설치·운영 중⁵⁾임. 해당 팀은 평균적으로 한 해에 4건 정도 사례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2024년 6월까지 총 35건의 사례를 분석함.

- 영국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제9조⁶⁾에 따라 16세 이상 사람이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하면 내무부장관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사망검토를 진행할지 결정하여 경찰서, 지방정부, 보건전략국 등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게 가정폭력 사망검토를 지시하여 수행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검시관법(Coroners Act 2008)」 제102조(T~W)⁷⁾에

- (ii) educating the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policymakers about domestic violence fatalities and strategie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and
- (iii) recommending policies, practices, procedures, and services to reduce fatalities due to domestic violence. (이하 생략)

[출처: https://opdv.ny.gov/system/files/documents/2023/10/nys-executive-law-57510-2020_0.pdf]

5) 구체적인 팀 구성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opdv.ny.gov/system/files/documents/2023/10/nys-team-list-oct-2023_1.pdf

6) 9. Establishment and conduct of reviews

- (1) In this section “domestic homicide review” means a review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ath of a person aged 16 or over has, or appears to have, resulted from violence, abuse or neglect by –

- (a) a person to whom he was related or with whom he was or had been in an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or

- (b) a member of the same household as himself,
held with a view to identifying the lessons to be learnt from the death.

-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in a particular case direct a specified person or body within subsection (4) to establish, or to participate in, a domestic homicide review.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4/28/section/9#commentary-c21241781>]

7) Division 1C--Victorian Systemic Review of Family Violence Deaths unit

102T Definitions

In this Division –

“family violen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 .

102U Establishment of the VSRFVD

The Victorian Systemic Review of Family Violence Deaths unit is established.

102V Membership of the VSRFVD

The VSRFVD consists of –

- (a) the State Coroner; and
- (b) any other persons appointed by the State Coroner.

102W Functions of the VSRFVD

The VSRFVD has the following functions –

따라 검시법원에서 검시법원의 검시관과 검시관에 의해 지명된 자로 구성된 가정폭력사망검토기관(VSRFVD, Victorian Systemic Review of Family Violence Deaths Unit)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하여 기존의 수사·조사 절차와 별개로 사건 분석 및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유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조사·분석 대상을 법적 판결이 끝난 종결 사건으로 한정하거나 가정폭력 사망검토제의 실시 주체를 형사사법기관으로 하는 방안 등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유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 미국 뉴욕주의 경우 법적 판결이 끝난 종결 사건으로 조사·분석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 (a) to examine deaths suspected to have resulted from family violence;
 - (b) to identify risks and contributory factors associated with deaths resulting from family violence;
 - (c) to identify trends and patterns in deaths resulting from family violence;
 - (d) to identify trends and patterns in responses to family violence;
 - (e) to provide coroners with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exercise of the VSRFVD's func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a), (b), (c) and (d).

8) NYS Executive Law 575(10) 10. Fatality review team.

- (c) The team shall review deaths or near deaths in cases that have been adjudicated and have received a final judgment and that are not under investigation.

다만, 종결된 사건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건발생일로부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 등 자료 수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고 적시성 있는 분석이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함⁹⁾.

둘째,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형사사법정보”¹⁰⁾를 제외하고 있음.

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¹¹⁾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는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사법정보를 제외한 자료만으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시됨.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는 경찰, 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나 자료 공유 없이 사건 분석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경찰, 법원, 지방정부, 복지 관련 부처 등 유관 기관이

9) 예컨대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가정폭력사망검토기관이 2024년에 2022년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 비판하는 기사(https://www.parliament.vic.gov.au/parliamentary-activity/hansard/hansard-details/HANSARD-974425065-26573?utm_source=chatgpt.com)도 나온 바 있음.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모두 검토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¹²⁾.

가정폭력 사망검토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검토위원회에 검찰,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을 포함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부처 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¹³⁾.

셋째, 전진숙의원안 제4조의10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사

12) 예컨대 미국 뉴욕주의 경우 법 집행기록, 법원기록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NYS Executive Law 575(10) 10. Fatality review team.

h)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federal law, upon request the team shall be provided client-identifiable information and record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a domestic violence-related death or near death incid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records maintained by a 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

(ii) law enforcement records, except where the provision of such records would interfere with an ongoing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or identify a confidential source or endanger the safety or welfare of an individual;

(iii) court records;

(iv) probation and parole records;

(v) records from domestic violence residential or non-residential programs;

(vi) records from any relevant service provider, program or organization; and

(vii) all other relevant records in the possession of state and local officials or agencies provided, however, no official or agenc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or records concerning a person charged, investigated or convicted in such death or near death in violation of such person's attorney-client privilege.

[출처: https://opdv.ny.gov/system/files/documents/2023/10/nys-executive-law-57510-2020_0.pdf]

13)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라도 부처 간 협의는 필수적인 사항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유족 등에 대한 면담, 형사사법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2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에서 중복수사 우려, 형사사법정보의 포괄적 제공의 부적정성,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 저해 우려, 위원회 남설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2025년 7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망사건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¹⁴⁾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넷째, 전진숙의원안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및 사건관계인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봄.

다. 관계기관 의견

여성가족부는 두 개정안에 대하여 형사사법정보를 제외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사례분석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조사권이 없고 제3기관이 별도로 진행사건에 대해 분석·보고하는 경우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문제)하므로 형사사법기관이 직접 사례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신중검토 입장임.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무부는 두 개정안에 대하여 (1)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사망 사건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안 제4조의8제1항·제2항)은 중복 조사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례 분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안 제4조의9제1항)은 수집될 자료의 범위, 수집할 대상, 수집 절차 등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전진숙의원안에 대하여 (3)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며, (4)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사 요청(안 제4조의10제5항)은 중복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조사 결과가 수사·재판결과와 상충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두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가 수행 예정인 사례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은 각 부처에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 활용을 통해 수행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진숙의원안에 대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은 사인에 의한 생명권 또는 신체의 자유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없다는 신중검토 입장임.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전진숙의원안에 대하여 (1) 해당 업무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정보까지 요청 정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안 제4조의9제1항), (2) 사망 피해자의 진술 공백 보완을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제3자(피해자 대변인, 가족, 친구 등)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4